

Part5 재무행정

■ 예산과정·예산결정모형·예산편성제도

구 분	지 문	○·× 표시
1	점증주의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 등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. - 2022 군무원 7	
2	계획예산제도는 점증모형에 의한 예산결정이다. - 2022 군무원 7	
3	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. - 2022 군무원 9	
4	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. - 2022 군무원 9	
5	정부의 시정연설 후에 국회에서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심사를 하고 의결을 한다. - 2022 군무원 9	
6	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인해 의원내각제인 나라에 비해 예산심의회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. - 2022 군무원 9	
7	기획재정부는 조정된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. - 2021 군무원 9	
8	기획재정부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따라 각 부처의 세부사업에 대한 심사보다 부처예산요구총액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. - 2021 군무원 9	
9	총체주의적 예산결정모형은 품목별 예산제도를 바람직한 예산편성방식으로 인식한다. - 2020 군무원 7	
10	예산의 재배정은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. - 2020 군무원 9	
11	이체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깊은 통제 확보방안이다. - 2020 군무원 9	
12	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- 2021 군무원 9	
13	PPBS는 참여적(민주적) 관리와 관련 깊은 예산편성제도이다. - 2021 군무원 9	
14	품목별 예산제도의 분석의 초점은 항목별 지출대상이며 이를 통해 통제성을 높이하고자 한다. - 2021 군무원 9	
15	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의 파악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한다. - 2021 군무원 9	
16	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. - 2023 군무원 9	
17	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국회 예산심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(예산 불성립시)에 적용하는 예산제도는 준예산이다. - 2023 군무원 9	
18	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연차별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특징이다. - 2023 군무원 9	
19	영기준예산제도(ZBB)는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하향적으로 진행된다. - 2023 군무원 7	
20	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- 2023 군무원 7	
21	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할 수 있다. - 2023 군무원 7	
22	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- 2023 군무원 7	

오엑스 해설

■ 예산과정·예산결정모형·예산편성제도

구 분	해 설	○·× 표시
1	점증주의는 소폭의 가감을 추진할 때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거침 → 정치적 합리성	○
2	계획예산제도는 합리모형에 기초한 예산결정을 추구함	×
3	국가재정법 제7조【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】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(이하 “국가재정운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○
4	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→ 단,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이 아니므로 국회의 심의·확정 대상이	×
5	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은 ‘정부의 시정연설 → 상임위 예비심사 → 예특위 종합심사 → 본회의 의결’의 순서임	×
6	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므로 견제와 균형 효과가 발생하는바 의원내각제인 나라에 비해 예산심의가 상대적으로 엄격함	○
7	국가재정법 제33조【예산안의 국회제출】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○
8	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서 각 중앙관서는 정해진 지출 한도를 지키면서 자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, 기획재정부는 이를 사정함 ② 다만, 중앙관서는 예산사정 및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부처예산요구총액과 더불어 사업의 우선순위도 같이 점검(중기사업 중심)받음	×
9	점증주의적 예산결정모형은 품목별 예산제도를 바람직한 예산편성방식으로 인식함	×
10	예산의 재배정은 통제확보를 위한 제도임	×
11	이체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깊은 신축성 확보방안임	×
12	국가재정법 제25조【국고채무부담행위】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	×
13	PPBS는 집권적 예산편성제도임(참여적 관리×)	×
14	품목별 예산제도의 분석의 초점은 투입·항목·품목이며 이를 통해 행정부에 대한 통제성을 높이고자 함	○
15	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 비용과 업무량의 파악을 통해 능률성을 높이고자 함	×
16	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	×
17	국가 재정활동의 단절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	○
18	선지는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임 → PBS는 소규모 사업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바 장기적 계획성이 결여될 수 있음	×
19	영기준 예산제도는 상향식 예산편성제도임	×
20	국가재정법상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	×
21	국가재정법 제38조【예비타당성조사】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.	×
22	국가재정법 제38조【예비타당성조사】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	○

Part7 지방자치론

■ 주민참여제도·지방자치단체 사무·지방재정

구 분	지 문	○·× 표시
1	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경비를 전액 부담한다. - 2022 군무원 7	
2	원칙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의 소송이 허용된다. - 2022 군무원 7	
3	지방자치법 제21조(주민의 감사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()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·도는 (),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()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()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()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·도의 경우에는 ()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()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 - 2022 군무원 7	
4	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무는 정부조직법에서, 지방정부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, 각 정부 간의 업무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. - 2022 군무원 7	
5	우리나라 「지방자치법」 제11조에서 정하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·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, 시·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·도의 사무로, 시·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 - 2022 군무원 7	
6	우리나라 「지방자치법」 제11조에서 정하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분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최소화하여야 하며, 민간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. - 2022 군무원 7	
7	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(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)을 소환할 수 있다. - 2022 군무원 9	
8	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. - 2022 군무원 9	
9	「주민투표법」상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. - 2021 군무원 7	
10	「주민투표법」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도 주민투표권이 있다. - 2021 군무원 7	
11	주민발안, 주민소환, 주민투표,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이다. - 2020 군무원 9	
12	주민총회,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이다. - 2020 군무원 9	
13	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, 주민투표, 주민감사청구, 주민소송, 주민소환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참여가 허용되는 주민참여제도이다. - 2019 군무원 2차	
14	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. - 2023 군무원 7	
15	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 지표 중 총세입(總歲入)에서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나타낸다. - 2021 군무원 9	

오엑스 해설

■ 주민참여제도·지방자치단체 사무·지방재정

구 분	해 설	○·× 표시
1	①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국가사무이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위임사무를 집행할 때 국가기관적 지위를 갖게 됨 ② 또한,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해당 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을 모두 부담함	○
2	①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② 만약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일을 위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‘행정협의조정위원회’ 혹은 ‘직무이행명령’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(대법원 판례)	×
3	※ 괄호 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- 18세 - 300명 - 200명 - 150명 - 18세 - 주무부장관 - 시·도지사	.
4	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구분은 「지방자치법」에 규정되어 있음 →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, 국가사무는 제15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“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는 단서규정이 있어 사무구분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있지 않음 ② 참고로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인 부·처·청의 업무관할을 규정하고 있음	×
5	선지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‘보충성 원칙’에 대한 내용임	○
6	지방자치법 제11조【사무배분의 기본원칙】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·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,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.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·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, 시·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·도의 사무로, 시·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.	×
7	지방자치법 제25조【주민소환】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(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)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.	○
8	주민은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음	×
9	주민투표법 제5조【주민투표권】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	○
10	주민투표법 제5조【주민투표권】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.	×
11	모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임	○
12	양자 모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님 ※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하는 회의이며,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음	×
13	나열된 주민참여제도는 모두 일정 자격을 지닌 외국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제도임	○
14	지방교부세법 제9조【특별교부세의 교부】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.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.	×
15	선지는 재정자주도를 나타냄 →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의 비중임	×